

2022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작성지침 관련 질의 · 응답

1 작성 및 제출 관련

Q1

2022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 제출 기한은 보건복지부 공문 및 지침에 명시된 것과 같이 **2023년 4월 28일 (금)**까지입니다.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은 **2023년 3월 31일(금)**까지 제출

〈 2022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제출내용 〉

제출방법	제출자료	제출처
이메일	① 제출 공문 ② 원본 파일(HWP&PDF)	r2musso@nmc.or.kr, yiye1110@nmc.or.kr
우편	보고서 제본(2권)	(0456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51(기승플러스빌딩 7층)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평가운영팀(이예진 연구원)

* 2023년 공공보건의료계획도 동일하게 제출

○ 작년 말에 전체 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수렴에서 '기존 법정 제출기한'을 지켜야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평가 주체인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포함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4월 28일로 제출기한을 확정하였고, 현 시점에서 추가 제출기한 연장 논의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2

작년 심의 또는 평가 결과보고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지난 결과보고서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ppm.or.kr>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로그인 > 공공의료기관 > 기관정보알림 > 자료실

○ 이외에도 공공보건의료계획 관련 사항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 <https://www.ppm.or.kr>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커뮤니티 > 평가운영 >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결과 평가 지원 > 자료실

Q3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자료’는 어떻게 등록해야하나요?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자료’도 **2023년 4월 28일(금)**까지 등록하셔야 하며, 관련 매뉴얼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 페이지 : <https://www.ppm.or.kr>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로그인 > 공공의료기관 > 기관정보관리 > 기관정보조회 및 등록 > 기관정보등록

* 매뉴얼 : <https://www.ppm.or.kr>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공지사항 > 기사글 38 ‘2022 공공의료기관 주요현황 정보등록 안내’

○ 관련 문의는 아래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공공보건의료정보통계팀, 박현철 연구원, 02-6362-3721)

Q4

평가 체계, 기준,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 메일이나 전화 등 문의처를 통해 관련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으나, 연말에 지침개정 의견수렴 시 기관의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5

(□ 기관 현황)

정원 및 현원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 정원 및 현원은 모두 2022.12.31.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때, 정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공시 기준으로 작성하시되, 공시보다 세부적인 정원은 내부 규정 내 명시된 정원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현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으로 작성 요청드립니다.

Q6

(1.1 상위계획 연계 충실성)

표 내 '기본계획 과제번호'에서 해당하지 않는 과제는 삭제하면 되나요?

- 전체 기본계획 과제 중 해당 기관에서 어떤 과제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한 부분이므로 '기본계획 과제번호'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이 없는 과제에 대해서는 '-', '해당 없음'과 같이 표시하시고, 해당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우측 '사업명'에 해당하는 사업명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사업 분야	기본계획 과제번호	사업명
1분야.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1-1.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적 민간의료기관 확충	-
	1-2.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별 역할 정립	-
	2-1.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 지역 기반 대응 체계 마련	사업명
	2-2. 지역별 암 치료·돌봄 강화	-
	3-1. 산모,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취약층 의료서비스 보장	사업명1 사업명2
	3-2. 정신, 간호·간병, 말기 돌봄, 장기·혈액 등 의료 수요 증가 대응	사업명

Q7

(1.1 상위계획 연계 충실성)

공공보건의료계획과 타 법정계획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1) 2)에 모두 작성해도 되나요? (작성지침 p.56-57에 해당)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타 법정계획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2)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외 타 법정계획 또는 자체계획’ 두 군데에 모두 작성하시면 됩니다.

Q8

(1.2 계획 심의결과 권고사항 반영)

심의의견 결과 내용 중 보완 내용만 반영사항 작성하면 되나요?

- 모든 심의의견에 대해 요약하여 작성하시되, 보완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반영가능한 경우에는 반영한 내용에 대해 작성하시고, 현재 반영불가능한 경우에는 향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Q9

(1.4 사업 수행 시 협력활동)

사업수행 협력활동의 경우 증빙자료에 일자를 표기하도록 되어있는데(제목 셀), 사업명을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지침 p.58-60에 해당)

- 네, 사업명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 전반적으로 작성서식의 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보다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은 무방

< 예시 >

- 세부 증빙자료

(예) 운영위원회	(예) 심의결과 공유			
일자				

Q10

(1.5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의 적정성)

최대 개수를 45개로 제한했는데, 내부·외부·유관기관 반드시 15개씩 맞춰야 하나요? 또한 교육별 사업분야를 꼭 1~3분야 고루 기입해야 하나요?

- 1.5 교육훈련 적정성은 각각 최대 15개씩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15개 안에서 1-3분야 각각 5개씩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관 자율)

Q11

(1.5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의 적정성)

혹시 공공보건인력 역량강화 교육에서 지침설명회 교육도 작성 포함되나요?

-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작성지침설명회는 지침에 대한 안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침 내 해당 지표에 대한 설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12

(1.6 사업 총괄표)

세부 사업명 내 '계획 사업명' 및 '추진 사업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왼쪽 '계획 사업명'에는 22년 공공보건의료계획에 작성하신 모든 사업명을, 오른쪽에는 '추진 사업명' 실제로 22년에 추진한 사업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좌우란을 통해 변동사항이 확인될 수 있게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13

(1.6 사업 총괄표)

'계획 사업명' 및 '추진 사업명'이 동일하면 같은 사업명을 기재하면 될까요? 별도 작성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명이 같다면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이 동일한 경우, '추진 사업명'란에 '좌동'이나 '변동 없음'과 같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존 계획 대비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해주시면 됩니다.

Q14

(1.7 사업 추진결과, 1.8 세부 사업 추진결과)

1.7과 1.8 작성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전체 사업을 작성하는 부분과 핵심사업을 작성하는 부분이 헛갈립니다.

- 분야별 ‘1.7 사업 추진결과’는 모든 사업을 간략히 작성하는 부분이고, ‘1.8 세부 사업 추진결과’에서 각 그룹별 핵심사업 개수에 따라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보다 자세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 1.6 사업 총괄표, 1.7 사업 추진결과, 1.9 모니터링 체계 및 자체평가 결과는 분야별로 전체 사업에 대해 작성하시고, 1.8 세부 사업 추진결과만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작성하시게 됩니다.

Q15

(1.7 사업 추진결과, 1.8 세부 사업 추진결과)

핵심사업은 1.7 사업 추진결과에 대략적 작성 후 2개 사업은 뒤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건가요? 이 때 핵심사업은 1.7과 1.8을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 분야별 ‘1.7 사업 추진결과’ 부분에 모든 사업을 작성해주시고, ‘1.8 세부 사업 추진결과’에서 핵심사업을 각 그룹별 핵심사업 개수에 따라 선정하여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핵심사업은 ‘1.7 사업 추진결과’와 ‘1.8 세부 사업 추진결과’에 두 번 모두 작성하게 됩니다.

Q16

(1.8 세부 사업 추진결과)

핵심사업을 2개 선택해야하는데, 2022년 계획에 해당 분야의 사업을 1개만 작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시된 핵심사업 개수는 최대 작성할 수 있는 개수이므로, 제시된 핵심사업 개수보다 추진한 사업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수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1개의 핵심사업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1.8 세부 사업 추진결과)

Q17

핵심지표 제출 기준보다 더 제출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를 들어 2개 제출해야 하는데 3개를 제출하면 어떻게 평가되나요?

- 평가 시 기관별 형평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3개 사업을 작성하여 주시더라도 2개 사업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2개 사업만 선정하여 작성해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다만, 1.7 부분에는 모든 사업에 대해 작성

(1.8 세부 사업 추진결과)

Q18

필수분야에서 2개, 2개만 평가를 받는게 맞나요?

제시된 핵심사업 수보다 더 작성한다면 평가를 더 잘 받는 건가요?

- 제시된 핵심사업 수보다 더 많이 작성하셔도 평가를 더 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시된 최대 핵심사업 개수만큼만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9 모니터링 체계 및 자체평가 결과)

Q19

공공보건의료계획에 작성된 모니터링 방법 및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 기존에 공공보건의료계획에서 작성하시던 모니터링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실제 수행한 모니터링 및 자체 평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부 작성방법은 ‘2022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작성지침’ 내 해당 지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0

(공통)

작성서식에서 해당그룹 표시가 없거나 미해당인 지표는 작성하지 않고 삭제해도 되는 건가요?

- 평가그룹에 해당이 없는 지표이거나 ‘미작성’으로 표시된 경우, 해당 서식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미해당’ 표시 지표는 작성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체 기관의 자료를 일괄적으로 협조 받아 정량평가를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따로 해당 결과를 작성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Q21

(2.5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각 응급의료평가 항목과 기준에 따라 수준이 매우 크게 차이가 있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정점수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일반 응급의료기관과도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보정점수를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기에도 보정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건의 드립니다.

- 현재 제공되어있는 점수화방안(안)은 확정사항이 아닙니다. 올해 배점 등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부분 등을 포함하여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고 최종 점수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평가지표 등에 대한 의견은 연말에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견 수렴’ 시에도 제시하여 주시면 차년도 지침 개정 시 논의하겠습니다.

Q22

(2.6 의료기관 인증)

의료기관 인증은 '미작성'으로 되어있는데 점수는 배점이 되어있습니다. 미작성이 맞을까요?

- '미작성'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관에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관 작성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과 같이 '미작성' 표시되어 있는 지표는 외부 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아 평가할 예정입니다.

Q23

(2.7 표준진료지침)

표준진료지침 관련 사업은 2분야 정성평가에서도 작성하고, 2.7 표준진료지침 정량지표로도 제출하면 되나요?

- 네. 정성평가 양식에 작성해주신 내용은 정성지표 점수로, 2.7 정량 양식에 작성해주신 내용은 정량지표 점수로 각각 포함되므로, 둘 다 작성하시면 됩니다.